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8. 18 선고 2020가단11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8,7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가 2017.경 부산 서구청이 발주한 ‘D시장 하수시설 정비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’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수주하여 시행함에 있어, 피고의 배우자 C을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장비 및 공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, 배우자인 C이 현장소장인 점을 이용하여 장비 등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8,750,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청구하자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비를 정산받은 것이지,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툼다.

나. 판단

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그 주장과 같이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세진